

본 협회,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운영

지난 '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한국공정경쟁협회도 각종 하도급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협회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토록 할 예정이다.

이는 최근 하도급분쟁에 대한 분쟁조정 요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8개 사업자단체의 협의회 외에 본 협회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, 특정의 동종사업자로 구성되지 아니한 본 협회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쟁 조정시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다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하도급분쟁협의회는 공익대표위원, 원사업자 및 하도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비율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.

또한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조사·연구 등의 전문기관인 본 협회에서 하도급분쟁을 조정할 경우 공정거래제도의 확산과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의 조성이 보다 용이하며 분쟁조정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